

## 『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』 제정(안)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

관세청은 「관세법」 및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·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『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』 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. 그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I. 제정이유

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**대응 강화**를 목적으로 자료확보 **실효성**을 높이고,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**공정·정확**한 관세조사 수행하기 위함

### II. 주요내용

-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제1조, 제2조)
-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절차(제3조~제6조)
  -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
  -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절차
-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(제7조~제18조)
  - 제출 비협조자 정의 및 대응원칙
  - 관세조사 중지·연장, 과태료 부과, P/L 신고배제, 검사율 상향
  - 월별납부 배제,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
  - 거래가격 부인, 조사의뢰·통고처분,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
-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방안(19조)

### III. 시행일자

- 2024. 3.

### IV. 의견제출

- 제출처: 관세청 기업심사과
- 담당자: 문아영사무관(042-481-7656)
- 제출기한: 2024. 3. 15.
- 제출방법: E-mail([ahyoung101@korea.kr](mailto:ahyoung101@korea.kr)), Fax(042-481-7989), 우편(35208,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)

### I 첨부 파일 (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)

- [붙임1]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\_행정예고
- [붙임2]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\_전문

### | Contact



유다예 관세사/Senior Manager  
T 070-4353-1588  
E [dyyoo@esein.co.kr](mailto:dyyoo@esein.co.kr)



성단샘 관세사/Manager  
T 02-6011-3021  
E [dsseong@esein.co.kr](mailto:dsseong@esein.co.kr)